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7호의2 신설).
-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허용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-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며,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의6 신설).
-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기준에 맞는

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함(안 제11조의8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, 안 제11조의2제4항은 등록을 직권말소(재량)하도록 하고 있고, 안 제11조의14제1항은 등록을 취소(의무)하도록 하고 있어, 조문 간의 충돌이 있으므로 직권말소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11조의2제6항은 등록증 발급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개정안이 등록에 관한 사항(제11조의2제1항)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(제11조의2제7항) 등은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11조의6제1항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,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(제6호) 및 통신 판매중개업자(제8호)의 준수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11조의7제4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1호¹⁾에 의하여도

1) 제81조의13(비밀 유지)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

가능한 사항이므로,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.(국세청 의견도 동일)

- 개정안은 “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” 및 “제2장의3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과 농어촌민박단지 지정 등”을 신설하고 있으나, 제2장의3은 제2장의2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제2장의3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조문은 제2장의2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 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- 안 부칙 제4조는 기존 신고사업자가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, 신고확인증만 새 등록증으로 간주하고 있음. 그러나 등록증을 간주하는 것과 사업자의 등록지위를 간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, 기존 신고사업자가 신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- 그 밖에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

부과·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(이하 "과세정보"라 한다)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, 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